

## 「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」 사업자 추가모집공고

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,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를 보급하여 탄소배출 감축, 어업경비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 희망자로부터 접수를 받아 심사하여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8일

### 안 산 시 장

#### 1. 사업대상자

- 안산시 관내 어업인 중 수산업법에 따른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
-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
#### 2. 사업량

- 어선 1척 내외(사업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)

#### 3. 사업비 : 51,266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4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					
	계	기관·장비·설비대체				비고
		국비 (30%)	지방비(30%)		자부담 (40%)	
도비	시비					
안산시	51,266	15,380	15,380	-	20,506	「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」 시행지침에 따라 500마력 이상 기관 대체 시 국비 20%, 지방비 30%, 자부담 50% 적용

#### 4.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

- 지원대상 : 어선의 기관·장비·설비(고효율에너지기자재(등기구) 포함 이하 고효율 등)를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

- 지원품목 :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 제품 구입
  - 고효율 등(燈)(LED, 무전극등(燈) 등)
  - 노후화된 기관(디젤, 가솔린기관 등)
  - 그 외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 등
    - \*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,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·용품에 한정
- 지원한도 :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(설치비 포함)의 보조지원률로 지원

## 5. 사업자 선정방법(우선순위)

- 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, 그 사업대상자를 해수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

### <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>

가. 1순위 : 고효율등(燈) 및 유류절감장치

나. 2순위 :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

-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별 차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디젤 및 가솔린 지원 비율 배정하여 사업자 선정
- (디젤기관) ①전자식 엔진 교체자, ②노후화 순으로 선정
- (가솔린기관) 노후화 순으로 선정
- 추가 동점자 발생시 지자체 세부수립계획에 따라 선정하고 사업자 최종 선정 이후 집행잔액 등이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 변경하여 선정 가능

※ 유의사항(공통) : 기관 교체 시 상위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기존 설치된 기관 마력이 단종될 경우에는 허용범위 10%이하로 상위마력 설치가능

\* (예시) 316마력 단종시 320마력 기관 설치(기존 마력과의 허용마력 내 최소치 적용)

※ 추진계획에 해당하지 않거나,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「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」 및 안산시 자체 추진계획에 따름.

## 6. 지원 제외대상

○ 제외대상

①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

### 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

제13조(보조사업자 선정기준)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1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
2.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

② 사업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자를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최근 3년 이내(직전 연도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
-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\* 어선사고,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·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
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
-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
-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어선(기 지원받은 기관·장비·설비는 내용 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)
  - \* 기 지원받은 기관·장비·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
- 가족(부부 등)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
-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
  - \* 어선사고,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·유실로 소실되어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판단하여 예외적 허용 가능

○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

- ※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**
- 제23조(보조금 교부조건)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
    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   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  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    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    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  2.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
    - 가.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
    - 나.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
    - 다.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
    - 라.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

## 7. 구비서류

-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별지 제1호서식) 1부
- 선적증서, 어선검사증서, 어업허가증 각 1부
- 입출항 증명서, 위판실적 확인서(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각 1부

## 8. 심사결정 및 발표, 사업시행시기

- 사업자 신청 및 추가선정 : 2024. 10월 ~ 11월
- 보조금 심의 및 사업자 확정 : 2024. 11월
- 최종선정 : 2024. 11월
- 사업시행 : 2024. 11월 ~ 12월

## 9. 신청서 접수방법 및 안내

- 공고 및 접수 기한 : 2024. 10. 21.(월) ~ 2024. 10. 31.(목) / 토·일요일, 공휴일 제외
- 접수처 :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(단원구 돈지섬1길 10, 대부도 소재)
- 안 내 : ☎ 031) 481-3954

## 10.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자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 불가
- 위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·설치한 중요재산(기관·장비·설비)은 「보조금법」 제3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·제16조,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 51조, 제52조 및 「내용연수」에 따라 관리(사후관리 기간\* 내 양도, 대여, 교환, 담보제공 등 처분에 제한)

\* 사후관리 기간

분류	내용연수(사후관리기간)	처분제한기준
고가 동산(공통) (5천만원 이상)	기계류 등(15년)	매각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
디젤엔진, 가솔린엔진	조달청 내용연수	
그 외 유류절감장치	조달청 내용연수	
고효율 집어등	* 조달청 내용연수에 미해당될 경우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	

- 이 공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



##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### 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수집·이용 목적	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	
수집·이용할 항목	<p>[필수적 정보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, 국적, 직업, 주소·전자우편주소·전화번호 등 연락처</li> <li>○ 기타 사업자 선정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</li> </ul> <p>[선택적 정보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거 및 가족사항, 거주기간, 세대구성, 결혼여부 등</li> </ul> </li> <li>※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.</li> </ul>	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 됩니다.	
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	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.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필수적 정보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</li> <li>▶ 선택적 정보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)</li> </ul>
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 고유식별정보 : [주민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]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	

### 2. 제공에 관한 사항

제공받는 자	해양수산부 보조·용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	
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</li> <li>-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하거나,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</li> </ul>	
제공한 개인정보 항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</li> <li>-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</li> </ul>	
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	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·이용 됩니다.	
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제공 동의 여부	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	